

12. 不動產登記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5,205號 1996. 12. 30

주요 골자

- 가. 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므로, 지원장이 등기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함(법 제12조).
- 나. 종래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부속서류만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법 제21조 제1항).
- 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를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 함(법 제27조 제3항 및 제55조 제9호).
- 라. 등기신청시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단서).
- 마.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여받아야 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종래 부동산소유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만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산망이 완비됨에 따라 그밖의 시장 또는 군수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41조의 2 제1항 제3호).
- 사.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법 제72조).
- 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함(법 제4장의

2).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7조의 3).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의 송부 및 대장소관청에 대한 등기필 통지를 일정한 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7조의 5).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기타 등기사무처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77조의 6).

개 정 이 유

등기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특례를 정하며, 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등기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여 감독권과 지정권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